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1가단1473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9. 6.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0. 9.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3,202,13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202,1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14. 3. 10. 3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연 34.9%에, 2015. 3. 19. 7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연 32.9%에 각 차용하였고, 원고는 2016. 6. 14. 위 D은행으로부터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결과, 2016.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0,261,545원 및 그 중 1,797,598원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 6,010,447원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4.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F, C, G(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피고 등의 상속지분은 각 1/4이고,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이 있다.

라.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과 피고, F, G은 2020. 9.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인 각 1/4 지분을 포기하고 위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 등은 이 사건 분할협의 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2억 2,000만 원 정도로 보고 피고가 단독으로 이를 상속하되 위 가액의 각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C, F, G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11. 9.경 위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은행에 채권최고액 7,1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그 대출금 중 5,660만 원¹⁾을 C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F, G에게는 그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바.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변론 종결일 현재 C의 배우자와 그 자녀가 무상 거주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1/4 지분을 상속한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위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대신 피고로부터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받은 결과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3)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의 형으로서 C의 가족들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고 있는 피고가 C의 채무초과상태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가 선의인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 1) 결국 피고와 C 사이에 1/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2)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 3)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20. 11. 9. 주식회사 H 앞으로 채권최고액 7,1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의 원상회복 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함이 상당하다.

라.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 1)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책임재산) 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 2)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공동담보 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로 추인되는 1억 8,600만 원의 1/4 지분에 해당하는 4,650만 원(= 1억 8,600만 원 × 1/4)인데,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9. 15. 기준 피보전채권액 합계 23,202,137원이 위 공동담보 가액보다 적은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를 위 23,202,13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3,202,1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종신

부동산 목록

(1등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남구 아파트[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 공동주택

1층 내지 7층 각 862.78㎡, 8층, 9층 각 790.27㎡, 10층 688.44㎡, 지하 838.48㎡

부속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주차장, 상가, 펌프실, 변전실, 관리실

1층 599.53㎡, 지하 14.2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남구 대 343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1.33㎡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43200분의 3756 겹.

1)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 가액의 1/4(5,500만 원)에 근사한 금액이다.